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6
------------	------

발의연월일 : 2021. 1. 22.

발의자 : 강기윤 · 이명수 · 권명호

최형두 · 안병길 · 서병수

윤영석 · 구자근 · 곽상도

김희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 · 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 ·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3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u>사람</u>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u>-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 는 사람</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